

영토주권 입증 증거로서 과학조사에 관한 고찰¹⁾

정희제*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창조기획실

A Study on the Scientific Research as the Evidence of Territorial Sovereignty

Jeong Hee-Je*

*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Creation and Planning Office

핵심용어 : 영유권 분쟁, 주권행사, 독도, 과학조사, 증거 가치, 국가행위

Key Words : territorial dispute, Effectivités, Dokdo, scientific research, evidentiary value, act of state

1. 서론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는 영토분쟁에서는 자국의 영토주권을 주장하며 분쟁 당사국이 제출하는 자료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판례를 보면 ‘영토주권 행사 사실’이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난다.

....(중략).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독도, 이어도 등 해양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영토주권의 공고화’를 위해 과학조사²⁾를 수행하고 있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학조사가 영유권 관련 국제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실효적 주권 행사의 개념 및 요건

‘실효적 주권행사(Effectivités)’는 영토에서 정부권력의 행사를 보여주는 사실적 요소로, 다수의 국제재판에서 영토주권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³⁾ (중략) 다수의 국제재판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된 일반 국제법상 ‘실효적 주권행사’란 주권자로서의 의도 및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권한의 실질적인 행사라고 정의내릴 수가 있다. (중략)

3. 주권 행사로서 과학조사

과학조사가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과학조사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행위이어야 한다. (중략) 과학조사의 수행주체가 정부(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용역계약의 형태로 수행된 과학조사의 결과는 발주처인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결과는 연구를 수행한 해당 연구기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한편, 분쟁 도서 주변해역에서 수행한 과학조사라는 행위 그 자체가 증거로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건에서 “거북이 보존령에 의해 거북이알 채집을 규제하고 통제된 조치”를 영토에 대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중략) 결국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도서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사항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중략)

독도와 같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도서 주변해역에서 우리나라가 수행 중인 과학조사는 국제법상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다만, 분쟁 대상 도서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국내법에 근거한 국가행위로서의 과학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First Author : jeonghj@mabik.re.kr, 041-950-0635

1) 본 발표문은 해양환경안전학회 발표를 위해 만들어진 초고입니다. 학회 발표 이후 수정 및 보완하여 출판할 예정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글에서의 과학조사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해양과학 관련 연구사업’을 의미하기로 한다.
3) 이용희, “국제판례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독도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5(2013), 314쪽.